

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(~10.31)

- 사적모임 기준 단순화, 접종완료자 제한 완화 -

□ 수도권 4단계 · 비수도권 3단계 (~ 10.31(일) 24시)

* 비수도권 인구 10만 이하 시·군은 자율적 단계 조정

구분		기존	변경
사적모임	3단계	미접종자 4인, 접종 완료자 포함 8인까지	- 미접종자 4인 , - 접종 완료자 포함 10인까지 가능
	4단계	(18시이전)미접종자 4인, (18시이후)미접종자 2인, 단 식당카페 및 가정만 접종 완료자 포함 6인까지	- 시간 구분없이 미접종자 4인 , - 모든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접종 완료자 포함 8인까지 가능
영업시간	3단계	- 식당.카페 22시 운영 제한 -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 판매 홍보관 22시 운영 제한	- 식당.카페 24시 운영 제한 -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 판매 홍보관 운영시간 제한 해제
	4단계	- 독서실, 스터디카페, 공연장, 영화관 22시 운영 제한 -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 판매 홍보관 22시 운영 제한	- 독서실, 스터디카페, 공연장, 영화관 24시 운영 제한 -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 판매 홍보관 운영시간 제한 해제
스포츠 경기 관람 (4단계 지역)	무관중 경기	-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, 수용인원의 20% (실내), 30%(실외)까지 가능 (3단계 수준) * 야구, 축구, 배구, 농구 등 스포츠 관람 해당	
스포츠 대회 (4단계 지역)	대규모 스포츠 행사(체육대회) 금지	- 접종 완료자 등* 으로 최소 인원 참여하는 경우 개최 허용 * 참여 연령 및 전체 규모에 따라 PCR 음성 확인자(48시간 내)도 인정	
결혼식 (3,4단계 동일)	▲ 식사제공 결혼식 : 최대 99명 (49명+ 접종완료자 50명) ▲ 식사없는 결혼식 : 최대 199명 (99명+ 접종완료자 100명)	- 식사 제공 여부 관계 없이 최대 250명 ⇒ 49명 + 접종완료자 201명 ※ 식사 미제공시 총 199명 참석 예상도 가능 (99명 + 접종완료자 최대 100명)	
종교시설	3단계	전체 수용인원의 20% 까지	- 전체 수용인원 20%까지 가능 -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30%까지 (2단계 수준) ※ 소모임·식사·숙박 금지는 유지
	4단계	전체 수용인원의 10% 까지 (단, 최대 99인까지 가능)	- 전체 수용인원 10%까지 가능 -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20%까지 (3단계 수준) ※ 소모임·식사·숙박 금지는 유지
숙박시설	3단계	전 객실의 3/4까지 객실 운영	- 객실 운영 제한 해제
	4단계	전 객실의 2/3까지 객실 운영	
실내·외 체육시설 (3단계 지역)	샤워실 운영 금지	- 샤워실 운영금지 해제	

<이번역은 다누리콜센터 1577-1366에서 했습니다>